

의안 번호	985	【울산광역시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】 <b>검 토 보 고 서</b>
----------	-----	---

## 1. 검토경과

- 가. 제 안 일 자 : 2013. 05. 30.(목)
- 나. 제 안 자 : 서경환의원 외 6명
- 다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3. 06. 05.(수)
- 라. 위원회 심사일자 : 2013. 06. 14.(금)

## 2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설치·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설치 목적과 기능을 구체화하여 원활한 동행정의 수행을 기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주민자치위원회의는 동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·결정하기 위하여 설치한다는 설치 취지 수정(안 제15조)
- 나.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을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자치활동 등을 심의하는 기능으로 수정(안 제16조)

## 4. 관련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8조

## 5. 검토의견

- 울산광역시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의 규정에 보면 자치센터시설 및 프로그램운영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결정하도록 규정하는 조항과 불합치되는 제15조, 제16조에 규정된 자치센터의 운영과 자치활동, 위원회의 기능에 심의·의결규정에 의결기능을 삭제하고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동장과 주민자치위원회의 임무와 역할을 명확히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